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0. ~ 8. 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2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04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박계수 · 이영란 · 강형구

발의자 : 박혜정 · 서정진 · 장숙희
의원

1. 제정이유

-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와 시장·주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3조)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1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기관·단체 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도시·공간 정책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6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7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8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20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4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6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제27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해촉) 시민참여단 구성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1조(활동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6장,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26조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제31조 시민참여단 활동 실비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박계수 의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최은주 (협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

런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행 2019. 4. 1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92호, 2019.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1. 3.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41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순천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위원회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일·가정 양립 지원
5.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6.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04.18>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04.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 참여

제17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3.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시장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양성평등정책 단체 등의 지원

제2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양성평등 참여확대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
4. 양성평등 촉진에 필요한 사업
5.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 여성단체 한마음행사,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등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설 2016.09.22>

제27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주류화·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30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가. 보행 편의
 -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라.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3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3.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4.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타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현황 : 130개 지자체**

- 전남(9개소 : 구례, 고흥, 광양, 나주, 무안, 여수, 영암, 해남, 화순)

순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05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서정진 · 장숙희 · 오행숙
이현재 · 이복남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로 발돋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및 시장의 책무(안 제4조~제5조)
- 계획수립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인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과 시가 수행하는 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외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가
3.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안전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정책 등의 개선권고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의 또는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11조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 추진 기관·단체 재정적 지원,
제18조 위원회 출석 위원 수당 및 여비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서정진 의원, 자치혁신과 자치지원팀장 장다순 (협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5. (생략)

○ 타 지자체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581건

－ 인권 보장 및 증진 : 122건

(전라남도 8개소 : 전남도, 나주, 목포, 보성, 고흥, 영암, 완도, 화순)

○ 순천시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개 조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노인장애인과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체육진흥과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06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이복남 · 김영진 · 장숙희
이현재 · 서정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와 심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심리지원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응급개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에 따라 순천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
3. 광역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4. 그 밖에 심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시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 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응급개입) ① 시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 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환자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4조(심리지원) 심리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 운영 및 소요 예산 편성

5. 작성자 : 이복남 의원,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장 이경희 (협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6.]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⑦ (생략)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⑨ (생략)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1. 1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91호, 2020. 11. 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순천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3.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4.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8.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9.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10. 청년정신건강센터 등 필요한 정신건강 기구의 설치·운영
11. 그 밖에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정신의료 기관 또는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0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타 지자체 감염병환자등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3개 지자체**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중구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제정이유

-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 공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공유공간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이용자격 및 이용신청, 이용승인 및 이용승인의 제한, 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이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 이용료의 반환, 이용자 의무, 입장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22. ~ 7. 12.)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14.(여성가족과-12558)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성별로 구분한 통계 생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작성 사항에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생산해야 함. 이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평가항목 4. 성별통계에 해당됨.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서식 수정하여 개선하기 바람.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제5호 서식 내 성별통계 미구축						별지 제1호 서식-제5호 서식 내 성별통계 구축					
(앞면)						(뒷면)					
신청자	개 인 ()	성 명		전화번호		신청자	개 인 ()	성 명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F A X				대표자 (성별)		F A X	
		주 소						주 소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6. 2.(시민주권담당관-2427)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6.(기획예산실-8578)
 - ※ 법제처 입법컨설팅 : 2021. 6. 17.(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72)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18.(순천시 공고 제2021-1473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3.(제1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일정한 시간 대에 본래의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이용체계 구축과 편의시설 등 제반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공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공간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하는 공간 및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조직·단체·법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공간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신청) ① 공유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공간 예약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공간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취소 등의 조치 없이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3회 이내에서 이용허가를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지원·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
2.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나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회의, 모임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이용자가 공유공간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2조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승인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공유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7.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의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유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공간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의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 2분의 1 이상 참석한 행사·교육 등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
2. 면제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

제15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유공간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는 공유공간과 그 부대시설의 이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공유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이용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용공간 및 그 부대시설 등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소란행위 등을 한 사람
2. 법정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3. 공공시설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유공간 이용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 또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료

1. 시설이용료

공간 면적	이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상한금액	
50㎡ 이하	1시간	3,000원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50 ~ 100㎡ 이하		5,000원	
100 ~ 200㎡ 이하		8,000원	
200㎡ 초과		10,000원	

- 1) 이용 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2) 설비 설치 및 준비·마무리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 3)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4)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오후 6시 이후) 이용 시에는 이용료의 50%를 가산

2.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이용시간 도래 전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①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②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승인 신청서

(앞 면)

신청자	개 인 ()	성 명 (성 별)			전 화 번 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별)			F A X		
		주 소					
이 용 목 적							
이 용 일 시							
이 용 인 원		총 명		주 차 차 량		총 대	
이 용 시 설 (부 대 설 비)		기 본 시 설	시 설 명	이용시간	시 설 명	이용시간	
		부 대 설 비					
이 용 료		일금 원(₩ 원)					
기 타 참 고 사 항							
위와 같이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이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이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시)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시설이용 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접수, 처리, 서비스 통계,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3년

- ※ 정보제공 동의 해지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기 명시한 정보보유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취급이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시설물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는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 라.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마.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바. 순천시장이 타인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이용자는 개방공간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가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정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순천시장은 해당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시설물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6. 홍보물은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7. 행사종료 후에는 즉시 이용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별도 구입)
8. 순천시장은 이용기간 중 이용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본인은 순천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순천시장은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승인서

신 청 자	개 인 ()	성 명 (성 별)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 별)		F A X	
		주 소			
이 용 목 적					
이 용 일 시					
이 용 인 원		총 명		주 차 차 량	총 대
이 용 시 설 (부 대 설 비)		기 본 시 설			
		부 대 설 비			
이 용 료		일금 원(₩ 원)			
위와 같이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승인(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자	개 인 ()	성 명 (성별)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별)		F A X	
		주 소			
변경(취소)사유					
변 경 사 항	구분		당 초		변 경
	이 용 목 적				
	이 용 일 시				
	이 용 인 원		명		명
	이 용 시 간		시간		시간
	이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이 용 료		₩ 원		₩ 원
이와 같이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자	개 인 ()	성 명 (성 별)		전 화 번 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별)		F A X	
		주 소			
이 용 목 적 및 내 용					
감 면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료 면제를 신청하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	개 인 ()	성 명 (성 별)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 별)			FAX	
		주 소				
이 용 목 적 및 내 용						
이 용 시 설 (부 대 설 비)		기 본 시 설				
		부 대 설 비				
반 환 금 액		원 (₩ 원)	은행명 및 계좌번호			
반 환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이용료 반환을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7조(이용신청) ① 공유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공간 예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한 예약사이트 구축·운영
-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비의 10~15%로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6,160	-22,000	-1,040	-1,040	-1,040	-1,040
세입(a)	3,840	0	960	960	960	960
세출(b)	30,000	22,000	2,000	2,000	2,000	2,000

※ 2021년 공유공간 예약사이트 구축비 22,000천원 / 2022년부터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천원 소요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30,000	22,000	2,000	2,000	2,000	2,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30,000	22,000	2,000	2,000	2,000	2,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 : 총 3,840천원

- $16\text{개소} \times 1\text{회} \times 12\text{개월} \times 5,000\text{원} \times 4\text{년} = 3,840\text{천원}$
(개방시설 개수 $\times$ 월 대여횟수 $\times$ 12개월 $\times$ 평균 대관료 $\times$ 4년)

○ 세출 : 총 30,000천원

- 공유공간 예약사이트 구축 용역비 : 22,000천원
- 유지보수비 : 8,000천원 (2,000천원 $\times$ 4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주권담당관	담당관	김지식 (☎ 749-5579)
	시민참여팀장	강진숙 (☎ 749-5595)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2011. 9. 조례 제정 후 변경된 제도 반영 및 조문 정비 등을 현행화하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숙의민주주의 기반의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 갈등영향분석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2조)
- 갈등관리 사업, 관리실태 점검·평가 규정 등 신설(안 제15조~제17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1. 6. 22. ~ 7. 12.)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6.(여성가족과-14125)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 구성

본 조례 개정안 제14조는 성별영향평가지표 항목 중 3. 성별균형참여에 해당됨. 이에 해당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6. 8.(시민주권담당관-2518)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7.(기획예산실-8651)

※ 법제처 입법 컨설팅 : 2021. 7. 13.(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25)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18.(순천시 공고 제2021-1472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7. 30.(제14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주요 시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 또는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이 갈등 예방, 조정 및 해결에 필요한 민주적 리더십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시민 간, 시민과 시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의 기관·단체 등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갈등 예방과 해결의 기본원칙)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
2.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고려할 것
4.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갈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방법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갈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결과를 주요 시책 수립·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갈등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나. 그 밖에 갈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공정성, 전문성, 민주성, 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합의의 효력 및 이행)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합의사항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 사업 등) ① 시장은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관리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순천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6조제3항제5호의 “행정과 법률 등”을 “행정, 법률 및 갈등관리 등”으로 한다.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8조(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13명으로, 회의 개최는 2021년 4회, 2022년 이후부터 연 5회로 가정하여 회의참석 수당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52,800	8,800	11,000	11,000	11,000	11,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52,800	8,800	11,000	11,000	11,000	11,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52,800	8,800	11,000	11,000	11,000	11,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52,800	8,800	11,000	11,000	11,000	11,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 출 액 : 52,800천원

○ 산출근거

(2021년) 8,800천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00,000\text{원} \times 9\text{명} \times \text{연 4회} = 3,600\text{천원}$
- (갈등조정협의위원회) : $100,000\text{원} \times 13\text{명} \times \text{연 4회} = 5,200\text{천원}$

(2022년 이후) 매년 11,000천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00,000\text{원} \times 9\text{명} \times \text{연 5회} = 4,500\text{천원}$
- (갈등조정협의위원회) : $100,000\text{원} \times 13\text{명} \times \text{연 5회} = 6,50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주권담당관

담당관

김지식 (☎ 749-5579)

민원소통팀장

이전근 (☎ 749-5564)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2006. 11. 30. 조례 제정 후 시대와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
-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 등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2. 주요내용

-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로 제명 개정
- 조례 제정 목적, 기념이념,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자구 수정(안 제1조~제5조)
- 회의의 공개, 위원회 참여, 예산편성의 참여, 시민 제안, 정책토론 청구 등 일부 자구 수정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항 신설(안 제7조~제13조)
- 민주시민교육, 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육 위탁 등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8조)
- 마일리지 부여, 마일리지 관리, 인센티브 등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정 마련(안 제19조~제22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1. 7. 15. ~ 8. 4.)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28.(여성가족과-15877)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7. 8.(시민주권담당관-2979)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7. 14.(기획예산실-9996)
 - ※ 법제처 입법 컨설팅 : 2021. 8. 6.(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22)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7. 15.(순천시 공고 제2021-1672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7.(제16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9. 기타(조례안 마련 과정)

- 시민참여 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안 마련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진행

구 분	시기	추진내용
① 시민추진단 모집	1.20 ~2.8	▪ 모집인원 : 36명(남 24, 여 12) ▪ 참여대상 : 일반인, 여성, 청년, 시민단체 등
② 상견례 및 사전교육	3. 5.	▪ 교육주제 : 내 손으로 만드는 참여조례 ▪ 교육강사 : 이창림(민주주의 기술학교) ▪ 주요내용 :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등
③ 브레인스토밍 및 설문	3.17.	▪ 분과구성 : 4개 분과(1분과 9명씩) * 총칙, 시민참여제도, 참여활성화, 인센티브 ▪ 조례 시민 욕구조사 브레인스토밍
④ 조례안 작성 토론(1차)	3.31.	▪ 타지역 사례수집 및 조례 제정방향 검토
⑤ 조례안 작성 토론(2차)	4.22.	▪ 조례안(총칙, 참여제도) 작성 및 토의
⑥ 조례안 작성 토론(3차)	5. 4.	▪ 조례안(참여 활성화, 인센티브) 작성 및 토의
⑦ 조례안 작성 토론(4차)	6. 16.	▪ 조례 초안 검토 및 수정
⑧ 전문가자문(활동가, 법제처)	7. 5.	▪ 조례 초안 법제처 및 관련 전문가 자문
⑨ 조례안 확정 및 공유	7. 9.	▪ 조례안 최종 확정 및 시민추진단 공유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순천시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향상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추진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통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주권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7조(회의의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제안) 시장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받아 시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토론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고 타당성 논의 등을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청구는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의
대표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토론이 청구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결과를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토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사업 등을 변경·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책·사업 등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 시 시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 시키고, 공동체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이념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민주주의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다양성 존중 등 공동체 가치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주권, 민주주의, 시민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 이수증)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마일리지 부여)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공론화, 교육 등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마일리지 부여 제외)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를 받고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1조(마일리지 관리) 시장은 부여된 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마일리지의 적립현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민 참여 활성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2조, 제14조, 제22조에 따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 마일리지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민의 정책 공감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활성화
-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398,400	-116,000	-70,600	-70,600	-70,600	-70,6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398,400	116,000	70,600	70,600	70,600	70,6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398,400	116,000	70,600	70,600	70,600	70,6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398,400	116,000	70,600	70,600	70,600	70,6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시스템 구축비 : 56,000천원(2021년)
- 시스템 유지보수비 : 5,600천원(매년)
- 민주시민 교육 운영
 - 민주주의 학교 운영 : 40,000천원(매년)
 -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 : 20,000천원(매년)
- 시정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5,000천원(상품권 구입비 등/ 매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주권담당관	담당관	김지식 (☎ 749-5579)
	시민주권팀장	방수진 (☎ 749-555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2021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에 이·통·반을 신설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면 관할구역(안 별표 1)
 - 2개 리, 6개 반 신설 : 금호어울림더파크 1단지
- 삼산동, 도사동, 왕조1동 관할구역(안 별표 2)
 - (삼산동) 1개 통, 6개 반 신설 : 가곡 영무예다움 1단지
 - (도사동) 8통·3통 간 관할구역 조정, 8통·4통 간 중복지번 삭제
 - (왕조1동) 2개 통, 7개 반 신설 : 조례2차골드클래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15. ~ 7. 5.)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2.(여성가족과-1170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5. 25.(자치혁신과-604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4.(기획예산실-845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15.(순천시 공고 제2021-1428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7. 30.(제14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면 강청3리 다음에 강청4리, 강청5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서면 계란과 총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면	선평리	강청4	제1반	금호어울림더파크 101동
			제2반	102동
			제3반	103동
		강청5	제1반	104동
			제2반	105동
			제3반	106동
계	14	65	99	
총 계	163	468	709	

별표 2 중 삼산동 43통 다음에 44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도사동 3통4반, 4통1반, 8통1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왕조1동 72통 다음에 73통 및 74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삼산동	44	1	가곡 영무예다음 101동(101호~1803호)
		2	101동(104호~1806호)
		3	102동(101호~1803호)
		4	102동(104호~1804호) 102동(105호~1706호)
		5	103동
		6	104동
도사동	3	4	덕월동 860~887 오천동 857, 859, 881
	4	1	덕월동 218~224, 303~326, 650~720, 618~628, 636~649, 591~617, 629~634, 723
	8	1	덕월동 270~302, 327~443 (303~326 삭제) 오천동 459, 719~933 (857,859,881 삭제)
왕조1동	73	1	조례2차골드클래스 201동, 상가동
		2	202동
		3	203동

		4	204동
	74	1	205동
		2	206동
		3	207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서면	⋮ 선평리	⋮ 강청3 <u><신설></u>	제4반 <u><신설></u>	⋮ (생략) <u><신설></u>	⋮ 서면	⋮ 선평리	⋮ 강청3 <u>강청4</u>	제4반 <u>제1반</u> <u>제2반</u> <u>제3반</u>	⋮ 현행과 같음 <u>금호어울림더파크 101동</u> <u>102동</u> <u>103동</u> <u>104동</u> <u>105동</u> <u>106동</u>
계	14	63	93		계	14	65	99	
총계	163	466	703		총계	163	468	709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삼산동	⋮ 43 <u><신설></u>	⋮ 6 <u><신설></u>	⋮ (생략) <u><신설></u>		⋮ 삼산동	⋮ 43 <u>44</u>	⋮ 6 <u>1</u> <u>2</u> <u>3</u> <u>4</u> <u>5</u> <u>6</u>	⋮ 현행과 같음 <u>가곡 영무예다움</u> <u>101동(101호~1803호)</u> <u>101동(104호~1806호)</u> <u>102동(101호~1803호)</u> <u>102동(104호~1804호)</u> <u>102동(105호~1706호)</u> <u>103동</u> <u>104동</u>	
계	14	63	93		계	14	65	99	
총계	163	466	703		총계	163	468	709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현행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도사동	<u>3</u>	<u>4</u>	<u>덕월동 860~887</u>	도사동	<u>3</u>	<u>4</u>	<u>덕월동 860~887,</u> <u>오천동 857,859, 881</u>
	<u>4</u>	<u>1</u>	<u>덕월동 218~224, 303~326,</u> <u>650~720,</u> <u>618~628, 636~649, 591~617,</u> <u>629~634, 723</u>		<u>4</u>	<u>1</u>	<u>덕월동 218~224, 303~326,</u> <u>650~720,</u> <u>618~628, 636~649, 591~617,</u> <u>629~634, 723</u>
⋮	⋮	⋮	⋮	⋮	⋮	⋮	⋮
	<u>8</u>	<u>1</u>	<u>덕월동 270~443, 오천동 459,</u> <u>오천동 719~933</u>		<u>8</u>	<u>1</u>	<u>덕월동 270~302, 327~443,</u> <u>(303~326 삭제)</u> <u>오천동 459, 719~933</u> <u>(857,859,881삭제)</u>
⋮	⋮	⋮	⋮	⋮	⋮	⋮	⋮
왕조1동	72	2	(생략)	왕조1동	72	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u>73</u>	<u>1</u>	<u>조례2차골드클래스</u> <u>201동, 상가동</u>
						<u>2</u>	<u>202동</u>
						<u>3</u>	<u>203동</u>
					<u>4</u>		<u>204동</u>
				<u>74</u>	<u>1</u>		<u>205동</u>
					<u>2</u>		<u>206동</u>
					<u>3</u>		<u>207동</u>
⋮	⋮	⋮	⋮	⋮	⋮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5개 리·통, 19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60	865	5	
반 장	2,357	2,376	1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06,175	-8,775	-24,350	-24,350	-24,350	-24,35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6,175	8,775	24,350	24,350	24,350	24,3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06,175	8,775	24,350	24,350	24,350	24,35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106,175	8,775	24,350	24,350	24,350	24,35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24,350천원/연간 (이·통장 5명, 반장 19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5명 = 18,000,000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5명 = 3,000,000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5명 = 2,40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19명 = 950,000원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혁신과

과장

김경만(☎749-5453)

자치행정팀장

김종환(☎749-5625)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및 관련 법령 전부 개정(2021. 6. 9.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과 법령에서 명시한 지자체 위임사항에 대한 필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로 개정
-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 규정 및 확대(사물주소 도입),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안 제2조~제4조)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 및 비용 산정시 고려사항 규정, 제작비용 징수 방법의 다양화(안 제5조)
- 광고에 관한 사항(광고비용 및 무료 대상 세분화) 규정(안 제6조)
-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정(안 제7조~제13조)
- 손해배상 공제 가입 규정 신설(안 제14조)
- 위탁 업무 범위 및 세부 기준 규정(안 제15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입법예고 : 2021. 7. 15. ~ 8. 4.)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6.(여성가족과-1411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7. 2.(기획예산실-94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7. 15.(순천시 공고 제2021-1642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3.(제1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소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순천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행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02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3.

오행숙 · 김영진 · 강형구

발 의 자 : 장숙희 · 이명옥 · 남정옥
이현재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및 지원 등 (안 제5조 ~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①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 본부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 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2020. 8. 1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설(안 제22조)
 -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고려하여 지정, 지정확인서 발급)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신설(안 제23조)
 - 지정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해당구역 상시영업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
 -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해당구역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신설(안 제24조)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신설(안 제25조)
 - 지정취소, 등록취소, 시보 게시 등
- 전통시장과 순천시장의 명칭 명확화(안 제3조의2, 제8조의2,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25.(여성가족과-133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6.(기획예산실-859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30.(순천시 공고 제2021-1532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3.(제1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시장은” 을 “순천시장은” 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시장” 을 “순천시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시장의” 를 “순천시장의” 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시장 또는” 을 “순천시장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 을 “순천시장”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장” 을 “순천시장”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를 “(시장의 인정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을 “순천시장은” 으로, “전통시장” 을 “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을 “순천시장은” 으로, “전통시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장에게” 를 “순천시장에게” 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순천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순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순천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 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제22조 및 제23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4. 면 적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u>시장</u> 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u>순천시장은</u> ----- ----- ----- ----- -----.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u>시장</u> 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u>순천시장</u> ----- ----- ----- ----- -----.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	2. ----- ----- -----.

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8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생략)

②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

----- 순천시장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순천시장 또는 -----
-----.
----- 순천시장-----.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순천시장-----
-----.

제2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순천시장은 -----
시장-----

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순천시장은 ----- 시장-----

-----.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 순천시장에게 -----
-.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순천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
가 지정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받
은 경우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 절
차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
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
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

<신 설>

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
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
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
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
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
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순천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
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
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
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
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신 설>

<신 설>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
관) 및 명부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
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
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순천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
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제22조 · 제23조 (생략)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26조 · 제27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오행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3
----------	------

발의연월일 : 2021. 8. 3.

발 의 자 : 오행숙 · 김미연
박혜정 의원

1.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시민참여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각각 명시(조례안 제1조~제3조)
-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조례안 제4조~제5조)
-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 명시(조례안 제6조~제7조)
-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포상 명시(조례안 제8조~제9조)

-(내 용)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의 경우에 보조금 지원

-(종 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교통안전 의식 증진을 위한 시민 홍보와 교육,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계도 활동, 대규모 행사장이나 축제장 등의 교통정리 활동 등,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조례안 제10조~제19조)
- 부칙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명시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리책임부서: 교통과

연락처: 061-749-5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의 사고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8.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교육, 문화,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순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와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정비,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계획과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체험 교육
3.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홍보물 보급, 캠페인이나 행사
4.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교통 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이나 각종 공공 행사장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한 행사 또는 사업
2.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
3.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사업
4. 대규모 행사장이나 축제장 등의 교통정리 활동 등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 가. 기획예산실장
 - 나. 도시과장
 - 다. 안전총괄과장
 - 라. 도로과장
 - 마.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가.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나. 순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 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 라. 교통안전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장
 - 마.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 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 사.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자
 - 아.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08. 16.>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 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으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담당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하였거나 추진 중인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주요 정책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2., 2016. 1. 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22.>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12.27.	
2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8.19.	안전재난교통과
3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4. 3.	경제교통과
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3.13.	
5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6. 7.	교통정책과
6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5.30.	
7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9.11.11.	교통행정과
8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26.	경제유통과
9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2. 18.	민원과
10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21. 6. 4.	교통과
1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4.16.	교통기획
12	군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20. 12. 7.	경제과
13	김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9.11.14.	교통행정과
1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7.26.	교통과
15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10. 4.	교통정책과
16	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7.12.	교통행정과
17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4.11.	교통정책과
18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4.10.	교통정책과
19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12.27.	
20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9.27.	교통과
21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8. 1. 1.	교통행정과
22	보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9.30.	경제산업과
23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8.11. 7.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6. 9.27.	교통행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7.15.	교통사업과
26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4.30.	교통행정과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3. 25.	교통행정과
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2016. 6. 9.	교통행정과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8.12.18.	교통행정과
3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12.31.	교통운영과
31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10. 8.	경제교통과
32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8. 9.	교통과
33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9. 7. 5.	대중교통과
34	신안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9. 7.10.	안전건설과
35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6. 1.11.	대중교통과
36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10.16.	교통정책과
37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20. 3. 2.	교통정책과
38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11.19.	평화지역발전과
39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12.31.	건설교통과
40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6.10.17.	교통과
41	영덕군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2020. 4. 6.	도시디자인과
42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5.11.16.	건설교통과
43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5.24.	경제교통과
44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8. 1.	
45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6. 6. 9.	교통행정과
4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20. 6. 3.	교통정책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47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2016. 4. 4.	교통과
48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10.18.	교통행정과
49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8. 1.	교통행정과
50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6. 3.	
51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5. 21.	
52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5. 2.	도로교통과
53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6.26.	
5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6.12.	교통정책과
55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5.10.	교통행정팀
56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9.25.	안전건설과
57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21.	교통정책과
58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5.12.30.	안전도시과
59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7.18.	지역경제과
60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20.	교통정책과
61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11.15.	교통행정과
62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7. 1.	교통과
63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9.11.	도시주택과
64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2019. 4.30.	일자리경제과
65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12.19.	지역경제과
66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4. 20.	도시교통과

3 우리 시 교통사고 현황

□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발생(건)	사 망(명)						부 상(명)
		전 체	노 인	무 면 허	어 린 이	음 주	기 타	
2020년	1,319	27	10	2	-	2	13	1,979
2019년	1,436	25	13	2	-	-	10	2,292
2018년	1,311	29	12	2	1	1	13	2,001
2017년	1,325	27	16	3	1	2	5	2,094

※ 전 체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사망사고 증가

□ 월별 발생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27	-	2	3	1	1	2	3	3	2	5	2	3
2019년	25	1	1	1	1	1	3	-	7	2	2	2	4
2018년	29	3	-	2	2	4	3	-	3	7	3	1	1
2017년	27	3	2	2	1	2	1	1	5	0	4	2	2

□ 시간대별 발생 현황

구분 (사망)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020년	27	1	1	2	1	2	4	1	2	4	1	6	2
2019년	25	0	1	2	0	2	3	3	3	2	3	2	4
2018년	29	0	0	8	1	5	1	4	3	3	1	1	2
2017년	27	1	2	2	0	0	2	2	3	2	8	3	0

□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구 분(건)	계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 단독	차대 열차
2020년	1,319	210	1,061	48	0
2019년	1,436	251	1,126	58	1
2018년	1,311	238	1,020	53	0
2017년	1,325	288	967	69	0

□ 자동차 종류별 발생 현황

구 분 (건)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	기타
2020년	1,319(27)	896(14)	44(0)	180(8)	79(0)	3(0)	117(5)
2019년	1,436(25)	999(13)	73(3)	201(6)	87(2)	2(0)	74(1)
2018년	1,311(29)	932(16)	58(1)	186(5)	68(2)	10(2)	57(3)
2017년	1,325(27)	901(15)	65(1)	193(4)	99(2)	7(2)	60(1)

□ 법규 위반별 발생 현황

구 분 (건)	계	중앙선 침 범	신 호 위 반	과속	보행자 보호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기타
2020	1,319	51	126	7	40	689	406
2019	1,436	49	138	8	68	740	433
2018	1,311	43	128	10	53	677	400
2017	1,325	49	103	1	51	770	351

* 교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 할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9조(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 : 40,000원 / 40분 내외, 원거리 시 50,000원 / 40분 내외
- 2021 교통안전 지킴이 서포터즈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포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62,460	-2,460	-40,000	-40,000	-40,000	-40,000
세입(a)						
세출(b)	162,460	2,460	40,000	40,000	40,000	40,000

※ 세입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162,460	2,460	40,000	40,000	40,000	4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4,6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4,600
	일반보전금	- 강사 수당 40,000원*240회 =9,600,000원 : 9,600천원 - 교통안전 서포터스 포상금 (15단체*1,000,000원) : 15,000천원	24,600

○ 2022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40,000
세입	소계		
세출	소계		40,000
	일반보전금	- 강사 수당 40,000원*250회 : 10,000천원 - 교통안전 서포터스 포상금 (20단체*1,000,000원) : 20,000천원	30,000
	운영경비	· 홍보자료 제작 등 : 10,000천원	10,000

○ 2023년 이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40,000
세입	소계		
세출	소계		40,000
	일반보전금	- 강사 수당 40,000원*250회 : 10,000천원 - 교통안전 서포터스 포상금 (20단체*1,000,000원) : 20,000천원	30,000
	운영경비	· 홍보자료 제작 등 : 10,000천원	1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안전도시국 교통과 과 장 장 기 석 (☎ 749-5533)
 교통관리팀장 박 숙 희 (☎ 749-5910)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임을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 조례임을 명기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7조)
 -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
 - 1시간 단위 계상, 8시간 범위 내(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할 수 있음)
 -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활동확인서 첨부
- 재해보상 관련 조문 제목 정비(안 제15조)
 - “재해보상” →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입법예고 : 2021. 6. 22. ~ 7. 12.)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7.(여성가족과-1208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6. 3.(안전총괄과-9853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5.(기획예산실-8518)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22.(순천시 공고 제2021-1453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3.(제1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집)” 을 “(소집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해보상)” 을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소집)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소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5조(재해보상) ① ~ ⑤ (생략)	제15조(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소집 등)제4항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1년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시간당) : 8,887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53,0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53,0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153,0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시비	153,0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 매년 30,600천원
▪ 36,000원(8,887원 x 4시간) x 850명 = 30,6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과장 정학규(☎749-5466)
자연재난팀장 정종선(☎749-5655)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별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기능 중 ‘부실 별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15. ~ 7.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7.(여성가족과-120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4.(기획예산실-808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6. 6. 15.(순천시 공고 제2021-1370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3.(제1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건설기술 진흥법」----- ----- ----- ----- -----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u>부실 별점에 관한 사항</u> 3.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불법개발행위 발생지(사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제4호)
 - 불법개발지(사고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척
- 불법개발행위 발생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 마련(안 제20조의4)
 - 불법개발행위 발생지를 “사고지”로 등재
 - ※ 사고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 “사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및 삭제방법(안 제20조의5, 별표29)
 - 불법개발행위 발생시 “사고지” 등재 요청 (관계부서 → 도시과)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 (도시과)
 - 원상회복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삭제요청 (관계부서 → 도시과)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고지” 삭제 (도시과)
 - 원상회복 기준 및 회복 방법 명시

3. 개 정 안 : 별 첨

4.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 관련 부서 의견 1건, 민간단체 의견 1건

○ 관련 부서 의견

연번	제출부서	제출의견	비고
1	산림소득과	-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 전용지의 복구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분사항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나, - 불법 훼손지 복구에 관한 조례위임내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불법산지전용지의 사고지 회복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및 순천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지침을 준용하여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민간·단체 의견

연번	제출인	제출의견	비고
1	전남동부권 측량협회	- 사고지 복구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시되어 있음. 산지 복구를 위해 훼손 시 또 다른 산지를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에 대한 조치: 별표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 방법에 ‘다만, 임목·토지 등의 불법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는 내용 추가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제출 2건(입법예고 : 2021. 5. 6. ~ 5. 27.)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5. 27.(여성가족과-113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2021. 7. 29.(기획예산실-10819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3.(기획예산실-55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5. 6.(순천시공고 제2021-1119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8. 13.(제15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은” 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으로 한다.

4.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제20조의4 및 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등이 적치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 라 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5(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 ① 임목,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9호에 따른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 방법

1. 사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원상회복 계획서(복구설계도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2. 사고지 회복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목·토지 등의 불법개발 행위 발생지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토석채취의 경우

- 1) 훼손 전 경사도의 110퍼센트 이상을 성토, 절토하여야 하며, 훼손 전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 2)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3)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전 경사도의 1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 4)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성토, 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양이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무단 포장, 무단 공작물설치, 무단 물건적치의 경우

- 설치된 포장, 공작물 또는 물건을 제거하여 토지가 훼손 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

다. 입목 훼손을 수반하는 경우

- 1) 훼손 전 입목축적의 11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 2) 식재 후 3년 이상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 3) 활착된 입목축적을 측정하여 훼손 전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4) 입목축적의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3.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복구 완료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리부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사고지 명시 삭제를 요청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사고지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삭제 <u><신설></u>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설></u>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 ----- -----. 제20조의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고의 또는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등이 적치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를 말한다.
<u><신설></u>	제20조의5(사고지의 명시 및 삭제) ① 임목, 토지 등의 관리 및 단속 부서에서는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

<신 설>

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발생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9호에 따른다.

[별표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 방법

1. 사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원상회복 계획서(복구설계도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2. 사고지 회복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목·토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토석채취의 경우

1) 훼손 전 경사도의 110퍼센트 이상을 성토, 절토하여야 하며, 훼손 전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2)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전 경사도의 1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4)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성토, 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양이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무단 포장, 무단 공작물설치, 무단 물건적치의 경우

- 설치된 포장, 공작물 또는 물건을 제거하여 토지가 훼손 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

다. 입목 훼손을 수반하는 경우

- 1) 훼손 전 입목축적의 11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 2) 식재 후 3년 이상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 3) 활착된 입목축적을 측정하여 훼손 전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 4) 입목축적의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3.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복구 완료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리부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사고지 명시 삭제를 요청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사고지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로 제명 개정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6제2호)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불참자 과태료 미부과 근거 마련(안 제22조제7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22. ~ 7. 13.)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7.(여성가족과-1205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5.(기획예산실-853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18.(순천시 공고 제2021-1468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7. 30.(제14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을 “영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6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15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훈련 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별표 2 보수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실시
------	-----	---	---	-----------------

별표 3 나호 중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의 수수료를 “4,000원” 에서 “8,000원” 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불 참 사 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불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증빙서류 1부.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u>	<u>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 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 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 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 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u>영</u> <u>제9조제1항</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u>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 -----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 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 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 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 만, <u>법 제6조제2항</u> 에 따른 국가등 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 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제2항-----.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9조(주민협약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
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
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약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약회는 그 대표자 및 위
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
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일-----

-----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
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벽보 게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략)

<신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생략)

② ~ ⑧ (생략)

다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훈련 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2] (현 행)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보수교육	3시간	가. <u>관계법규</u>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u><신 설></u>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 실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기타교육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2] (개 정)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수교육	3시간	가. <u>관계 법규(2시간)</u>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u>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u>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시 실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3] (현 행)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비고
가. (생 략)	(생 략)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5,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u>4,000원</u>	
다. ~ 러. (생 략)	(생 략)	

[별표 3] (개 정)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비고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돌출간판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u>8,000원</u>	
다. ~ 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6]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 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 라. (생략) <신설>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신설> (생략)	(생략) <신설> (생략)	
2. ~ 4. (생략)	(생략)	(생략)	

[별표 6] (개 정)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 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 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을 표시 한 경우 가. ~ 라. (현행과 같음)	법 제20조제 1항제1호 및 제1호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현행과 같음)	
3. ~ 5. (현행 2. ~ 4.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8. 19.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재정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잉여금의 처분내용 및 용어 정비(안 제15조)
 - (현행) 이익 적립금 → (개정안) 이익 적립금의 적립
 - (현행) 감채 적립금 → (개정안) 감채 적립금의 적립
 - (현행) 배당 납입금 → (개정안) <삭제>
 - (현행) 건설 적립금 → (개정안) 건설개량적립금의 적립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5조 및 제3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22. ~ 7. 12.)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25.(여성가족과-1337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10.(기획예산실-83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21.(순천시 공고 제2021-1469호)
- 조례규칙 심의필 : 2021. 7. 30.(제14회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순서로 이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을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를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로, “처리한다.”를 “처리”로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제19조제2항 중 “계제”를 “계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 비를 부담한다.	제10조(일반회계부담) ----- ----- ----- -----.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 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u>다음의 순 서로 이를 처분한다.</u>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 -----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
1. <u>법의 규정에 따른 이의 적립금</u>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 <u>해에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u>	2. ----- ----- 연도 상환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u>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 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u>	<삭 제>
4. <u>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u>	4. <u>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 는 ----- 건설개량적립금으로</u>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
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
포) ① (생 략)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한 경우에 이를 시보
에 게제하여야 한다.

적립하고, 그 -----
--- 처리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
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게제-----.